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1230
----------	------

제출연월일: 2018. 9.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원)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이월액 및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526,515,189,320	448,276,843,950	78,238,345,370	42,282,988,641	35,955,356,729
일반회계	495,261,305,960	432,336,341,550	62,924,964,410	33,293,385,131	29,631,579,279
특별회계	31,253,883,360	15,940,502,400	15,313,380,960	8,989,603,510	6,323,777,4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7,689,850	380,870,450	86,819,400	18,996,390	67,823,010
주차장 특별회계	30,786,193,510	15,559,631,950	15,226,561,560	8,970,607,120	6,255,954,440

나. 기금결산보고서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 첨부서류

바. 예비비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원)

회계별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896,809,000	1,298,031,530	1,479,471,900	119,305,570
일반회계	구민참여활성화 (보조) 등 12건	942,809,000	793,003,430	30,500,000	119,305,570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사업 등 2건	1,954,000,000	505,028,100	1,448,971,900	0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관계법규 >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2.>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